

『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교육관 명칭 공모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내실있는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 위탁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(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→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)
- 교육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(안 제2조)
- 교육관 사무 위탁단체의 범위 확대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동법 시행령
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

- 당초 교육관의 명칭 공모 결과 선정된 “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”으로 제명 및 교육관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반영하고
- 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단도 교육관을 관리·운영 할 수 있도록 교육관의 사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